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6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66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소1036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22. 3. 31.

판결 선고 2022. 4.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소103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 검침일은 매월 16일이었는데, 2018. 8. 22.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전기 검침일을 2018. 10.부터 매월 1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는 2018. 9. 10.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검침일 변경요청을 하였고, 2018. 9. 25.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변경처리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8. 1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 검침일이 종전 매월 16일에서 매월 1일로 변경되었고, 전기 검침일이 변경됨에 따라 전기요금 납기일이 '다음달 5일'에서 '당월 25일'로 변경되었다.1)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월 원고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명세서를 통하여 관리비를 고지하였다. 관리비 명세서에는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라. 원고는 2018. 10. 2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2018. 9.분 관리비 명세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관리비 명세서에는 종전과 달리 TV수신료로 5,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관리비 명세서 상단에는 "2018년 9월분 관리비 전기요금 계산기간은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관리비 납부기한인 2018. 10. 31.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명의 계좌로 TV수신료 5,000원이 포함된 관리비 224,15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원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8. 9.분 TV수신료를 중복 납부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청원을 하였으나, 각 기관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TV수신료 징수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4, 1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TV수신료가 월 2,500원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9.분 TV수신료로 5,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5,000원 중 2,500원만을 한국전력공사에 입금함으로써 나머지 2,500원을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위 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을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2018. 8. 16.부터 2018. 9. 15.까지의 전기 사용기간에 대하여 2018. 9.분 전기요금으로 55,655,100원, 같은 해 9.분 TV수신료로 2,275,000원(각 2500원 × 910대2))을 청구하여, 그 합계 금액인 57,930,100원이 납기일인 2018. 10. 5. 이 사건 아파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된 사실, 2018. 9. 16.부터 2018. 9. 30.까지의 전기 사용기간에 대하여 2018. 10.분 전기요금으로 12,255,660원, 같은 해 10.분 TV수신료로 2,257,500원(각 2500원 × 903대3))을 청구하여, 그 합계 금액인 14,513,160원이 납기일인 2018. 10. 25. 같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자동이체로 두 차례 2개월 분 TV수신료가 출금된 2018. 10.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TV수신료를 청구함에 있어, 2018. 9.분 관리비 고지서로써 2018. 9.분 TV수신료와 2018. 10.분 TV수신료를 합하여 2개월분 TV수신료로 5,000원을 받았고, 2018. 9.분 TV수신료만으로 5,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2018. 10. 받은 2018. 9.분 TV수신료와 2018. 10.분 TV수신료로 받은 돈 합계 5,000원은 모두 한국전력공사에 2018. 10. 입금된 돈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회일

판사오연수

판사류창성

별지

1)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납기일이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57조 ①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2항에서 규정한 "납기일"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검침일	1~5	8~12	15~17	18~19	22~24	25~26	말일
납기일	당월 25	당월 말일	다음달 5	다음달 10	다음달 15	다음달 20	다음달 18

2) 을 제11호증 TV대수(894+16)

3) 을 제12호증 TV대수(887+16)

4)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및 입주민들에게 2018. TV수신료로 총 32,500원(2,500원×13개월)을 지급받았으나 한국전력공사에 30,000원(2,500원×12개월)만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1년분의 전기 사용기간은 2017. 12. 16.부터 2018. 12. 31.까지로, 이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 1.분부터 2019. 1.분까지 13개월의 TV수신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수신료를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피고로부터

TV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검침일의 변경으로 2018. 9.분과 2018. 10.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각 1기로 징수하면서 2018. 10. 2.기분을 징수한데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분 관리비고지서로 2018. 9.분과 2018. 10.분의 2기분을 징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